



[시행 2021. 4. 27] [대통령령 제31654호, 2021. 4. 27, 일부개정]

해양수산부 (총괄, 법령개정사항-해양환경정책과) 044-200-5289, 5290

해양수산부 (해양오염방제 - 해양환경정책과) 044-200-5283, 5293

해양수산부 (해역이용협의 - 해양보전과) 044-200-5305, 6137

해양수산부 (선박규제 - 해사산업기술과) 044-200-5834, 5835

1 () 이 영은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4 () 「해양환경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. <개정 2019. 7. 2.>

1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3조에 따른 내수
2.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

16 ()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9. 22., 2013. 3. 23., 2021. 1. 5.>

1.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·관리
2.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
3. 해역의 수질·밀바다 퇴적물(저질)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
4.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
5. 퇴적물 준설,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
6.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
7.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1. 9. 22.]

42 ()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: 0.1퍼센트(무게 퍼센트)
2. 그 밖의 해역
 - 가. 경유: 0.5퍼센트(무게 퍼센트). 다만,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.05퍼센트(무게 퍼센트)
 - 나. 중유: 0.5퍼센트(무게 퍼센트)

[전문개정 2020. 12. 29.]

43 ()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0. 12. 29.>

1.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
 - 가. 탄화수소 혼합물(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)일 것
 - 나.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
 - 다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
2.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
 - 가.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